

# 학교+너머 운동본부

/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엠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발 신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인권담당 기자
- 일 시 : 2016년 3월 29일(화)
- 문 의 :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난다
- 붙 임 :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 답변 분석 & 인권·교육단체 요구안 / 총 53쪽

## 아동학대 예방 대책, 이대로는 안 된다

### 각 정당, 아동학대문제와 어린이·청소년 인권 인식 미흡

: 각 정당 아동학대예방정책에 대한 답변 분석과  
인권·교육·청소년단체 요구안 발표

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실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입니다.

2. 올초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 대책은 ‘학대 발생 후 발견과 사후대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아래 너머본부)는 오래전부터 아동학대는 단지 ‘괴물 부모’에 의해 일어나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며, 예방/조기 발견/신고를 가로막는 사회문화 전반을 손보지 않으면 안 되며, 아동의 자기방어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더불어 고민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3. 총선 시기에도 각 정당이 정부 정책을 견인해내는 역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기에 우리 너머본부는 지난 3월 3일,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이상 가나다순)까지 총 6개 정당에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청소년 인권 문제에 관한 각 당의 의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더불어 3월 23일로 예정된 '각 정당 초청, 아동학대 예

방 정책 토론회'에 대한 참석을 요청했습니다.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점검하는 일이 평소 각 당이 갖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뿐만 아니라, 총선공약에서 아예 배제되거나 명분으로만 등장할 뿐인 어린이·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각 당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했습니다.

4. 너머본부의 질의서에 대해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총 5개 정당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정당은 오직 녹색당뿐이었습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떤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각 당이 보내온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정당 역시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사회문화를 일소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예산 검토까지 마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외적으로 녹색당만이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1] 참고)

5. 이에 우리 너머본부는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해결과 각 정당의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한 우리의 요구안을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요구안의 도출 근거는 [첨부자료 2] 참고)

### 아동학대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핵심 요구

1. 아동학대는 특정인이 저지르는 예외적 범죄가 아니라, '가해자와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분위기, 그리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삼각동맹'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아동학대가 발생, 유지, 재생산되는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어린이집, 학교, 학원, 아동보육시설 등 아동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주목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아동학대의 원인을 가해자의 잘못된 아동관이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아동의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를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마련하라.**

1. 심각한 폭력만이, 때리는 행위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언어적·정서적 폭력, 부모에 의한 방임, 유기만이 아동학대는 아니다. 학대의 핵심은 폭력의 세기(강도)가 아니라, 아동을 어떤 존재로 대우하느냐에 있다. 아동에 대한 직·간접적 체벌, 모욕, 학대를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비인간적 대우 등 모두가 아동학대일 수 있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모든 형태의 유·무형의 폭력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특단의 인권 대책을 마련하라.**

1.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분석 없이 신고 활성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학대예방교육 강화만으로 신고율은 높아지지 않는다.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서 체벌 등 아동 폭력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금지, 신고의무자 보호 확대, 신고의무자 처우 개선, 신고 이후 보호절차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가 확보된다는 명백한 보장 등 지원정책을 마

련하라.

1. (잠재적) 피해 아동은 보호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주체이기도 하다. 성인 중심, 신고의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정책은 아동 대상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의 방어권은 학대 신고 독려만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생활공간 안에서 일상적으로 인권을 존중받고 행사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다. **(잠재적) 피해 아동에 대한 권리 중심의 지원책을 마련하라.**

1. **학대를 견디는 피해아동의 복합적 심리에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 아동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경미한 체벌과 심각한 학대를 구분하는 사회의 이중적 메시지, 피해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사회의 이중적 반응, 신고 이후의 생활에 대한 불안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하라.

1. **각 정당은 대동소이한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피해아동 지원, 가해행동의 원인 분석, 기존 정책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라.

1.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 시설 중심 보호대책이 아동의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라.

1. 공공기관에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결별이 선언될 필요가 있다.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 제정(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우선이다.**

1. 아동학대 피해의 결과로 인해 발생한 **가출청소년(탈가정청소년) 지원 대책을 확충하라.** ‘아동학대 피해자의 가해자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엄벌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회복과 교육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전환하라.**

1. 공익신고자보호법만으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 효과가 미약하다. **영유아보육법처럼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신고의무자 보호와 불이익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6. 아동학대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 ※ 첨부자료

1. [첨부자료 1] 각 정당 답변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2. [첨부자료 1] 아동학대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살펴야 할 현황과 쟁점
3. [첨부자료 3] 각 정당 답변서 모음 (가나다순)

## 각 정당 답변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평가

### I. 서면 답변 태도

	국민의당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정의당
답변 여부	○	○	○	○	×	○
서면 답변 마감시한 준수 여부	×	○	○	○	×	×
토론회 참석 의사	불투명	불참	참석	불참	×	불투명

답변 마감일을 하루 넘긴 2016년 3월 17일 현재, 노동당, 녹색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네 곳에서 답변서를 보내왔으며,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정당은 오직 녹색당뿐이었다. 국민의당은 선거시기로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통화로만 간략한 입장을 밝힌 뒤 마감시한보다 일주일이나 지난 23일에서야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새누리당은 어떤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

### II. 질의서 답변 분석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총 7가지의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의 의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답변서를 작성했는가를 보면 각 당이 평소 아동학대 문제나 어린이·청소년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 너머본부는 애초 우리가 질문을 던진 의도에 비추어 각 당의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1. 아동학대 지속 이유에 대한 판단

[ 1 ]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sup>1)</sup>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질의한 목적

1) 칠곡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제정,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됐다.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행위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이 친권자일 경우 친권을 제한하는 임시조치도 가능해졌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도도 신설됐으며 신고의무자의 범위도 확대됐다.

너머본부는 이 질문을 통해 각 당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는지 ▲아동학대에 관한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특히 친부모에 의한 학대에만 집중하여 답변함 ->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없음
	▶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녀에 대한 무지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의 문제를 지적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아동학대를 가정에서의 문제로만 한정하였기에 원인 분석도 제한적.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의 학대를 간과하고 있음.
	▶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가 친부모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점을 주목하고 재혼가족에 대한 편견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 그러나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기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은 부족.
	▶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알고 있는가	학대가정으로의 재복귀문제만 지적 -> 정책 한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 부족
노동당	▶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명확한 언급 없으나 가정에서의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만 파악하고 있는 듯한 인상.
	▶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빈곤, 불평등, 살벌한 생존경쟁이 성인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으며, 저성장 시대에 가속화될 빈곤, 실업, 불평등이 아동학대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 답함. -> 보호자의 경제적 형편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데 일조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요인에서만 찾는 것은 아동학대의 문제를 일면화하는 것임.
	▶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가	언급 없음
	▶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알고 있는가	언급 없음
녹색당	▶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가정내 아동학대뿐 아니라 학교, 대안 돌봄 환경 등에서의 체벌, 정서 학대에까지 확장하여 인식하고 있음.
	▶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어린이·청소년의 자살율, 교내 괴롭힘 문제 등도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파악하여 긍정적.
	▶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가	체벌에 관대한 사회문화, 경쟁적 교육환경, 보호자의 사적 의무에 내맡겨진 돌봄 환경 등 언급하여 긍정적.
	▶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알고 있는가	제한적 아동학대 예방을 넘어 1)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장하고, 2) 보호자의 사적 의무를 넘어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제시.
더불어민주당	▶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사후 발견과 처벌을 중심으로 설계된 아동학대 범죄처벌특례법을 중심으로만 답변하는 한계를 보임.
	▶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없음

▶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가	없음
▶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알고 있는가	세부실행방안, 인프라, 예산미비 등으로 특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 정책의 한계에서 원인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나, 이를 아동학대의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아동학대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는가	아동을 때리는 것은 학대이고 학대는 범죄라고 인식의 중요성 지적. 이는 아동학대를 '직접적 신체적 폭력'에만 국한하여 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다층적 분석 없음
▶ 아동학대를 목인하고 부추긴 사회적 측면을 주목하는가	아동 학대를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문화를 지적한 것은 긍정적.
▶ 기존 정책의 핵심적 한계를 알고 있는가	언급 없음

## 2.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다양한 장소에 대한 판단

[ 2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 질의한 목적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각 당이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의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지 ▲각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다. 각 정당이 각 장소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장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를 만들어내는 공통 원인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정당이름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가	가정 80%, 그밖에 집근처 또는 길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학원, 학교, 친척·이웃집 등에서 20% 발생한다고 지적.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유형만 제시.
	▶ 각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장소별 현황과 특성에 대한 파악은 없음.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이웃을 신고하는 부담, 부모교육 부족 등의 원인만 지적.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학대 원인에 대한 파악은 부족
노동당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가	현황 파악은 제시하지 않음

	▶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가	부모의 경우 경제적 곤란, 사회적 배제와 차별,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을 원인으로 지적. ->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높은 경우에도 아동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함.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의 경우,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불비를 원인으로 지적 -> 열악한 노동조건이 왜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음. 초중고 교사와 학원 강사의 경우, 경쟁교육으로 인한 잘못된 권위주의, 부모의 저자세 등을 지적. -> 권위주의가 경쟁교육으로부터 비롯된다는 파악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부모의 저자세를 학대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 공통 원인으로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지배적 아동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임.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가	가해자-피해자 관계를 부모, 친인척, 대리양육자(유치원 종사자, 교원, 시설종사자 등), 타인, 기타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제시. 최근 10년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가해자의 성별, 연령, 직업 등도 함께 제시한 것이 긍정적.
	▶ 각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가	장소별 발생 원인과 특성에 대한 별도 언급은 없음. 가해자들이 다양한 환경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지적.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을 주요 특성으로 제시.
더불어민 주당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에만 주로 집중하여 답변. 교사 및 강사 등에 의해서는 '은밀히'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정도만 언급. -> 교사, 강사에 의한 아동학대가 '은밀하게'만 일어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각 장소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은 없음.
	▶ 각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부모의 그릇된 자녀관을, 교사 및 강사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동학대는 교강사-아동간의 권력관계, 교강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 ->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복합적 분석은 없음.
정의당	▶ 가정,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현황을 고루 파악하고 있는가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만을 인용, 아동학대가 주로 발생하는 장소들을 열거하고 있음. 개별 공간에 대한 분석은 따로 담겨 있지 않음.
	▶ 각 장소별 아동학대 발생 원인과 특성을 어떻게 파악 하고 있는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가정 안에서의 아동학대에 국한해서만 제시. 아동학대가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한다고 하면서도 <2014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할 뿐, 독자적 분석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한계적.

### 3.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에 대한 판단

[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질의한 목적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들이 왜 학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지는 아동학대 해결을 위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각 정당이 ▲신고 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분석하고 있는지 ▲신고 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지 ▲이들이 아동 인권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개인의 양심이나 법적 의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원정책도 필요로 함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별도의 분석 없음. 다만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 신고의무자가 아동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노동당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신고 의무자의 신분 공개 문제, 피신고자의 보복 가능성 정도로만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에 대한 일반적 분석만 나열하고 있을 뿐, 다양한 직군의 신고의무자가 처한 위치에 대한 구체적 분석은 없음.
	▶ 신고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 신고의무자가 아동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신고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공익제보자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시. -> 신고 보상제만으로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을지 의문. 신고를 망설이는 다양한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음.
녹색당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아동학대를 가정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심각한 학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신고하지 않은 문제 등 인식 수준의 저조를 이유로 제시. -> 이는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신고의무자들의 낮은 신고율의 원인은 될 수 있으나 입체적 분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신고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 신고의무자가 아동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보육의 공공성 강화, 어린이집 종사자 등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성 제고,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민주당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신고의무자의 신분노출 위험이라는 일반적인 문제만 지적. 신고의무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파악이 없음.
	▶ 신고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 신고의무자가 아동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의심 사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만 언급. -> 교육만으로 신고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판.
정의당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알고 있는가	신고자 보호 제도의 미비,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학대 발생 시 시설폐쇄 등 위험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울 수 있음을 파악한 것은



		. -> 그러나 시설폐쇄 조치가 신고를 가로막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지, 아니면 다른 보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신고의무자가 대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신고의무자가 아동인권옹호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전반에 적용되도록 확대해야 함을 제시. -> 그러나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영유아보육법에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신고의무자들의 다수 직군이 보호 대상으로 되어 있음. 다만 개별 법률에 명확한 불이익 금지 조치가 명시된 것은 영유아보육법뿐임.

#### 4. 피해아동의 대응력 강화에 대한 판단

[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질의한 목적

지금까지 아동학대 예방정책은 아동을 사건 해결의 주체적 존재로 보기보다는 '보호 대상'으로만 주로 상정하고 있다. 우리 너머본부는 이 질문을 통해 각 당이 ▲피해 당사자의 자기 방어권 행사를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해본 적 있는지 ▲해보았다면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하여 어떤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피해당사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인한 조기 발견,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언급할 뿐 당사자의 방어권 확대에 대한 언급은 없음.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학령기 이전의 아동은 외부활동이 적어 발견 가능성이 낮고,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의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에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만1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어 학대발견이 어려우므로, 사후 발견이 아닌 철저한 전수조사와 부모교육을 통한 선제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음. -> 학령기 이전 아동을 아예 '자기방어력이 없는 존재'로만 보는 것은 문제적. 사회적 노력을 통해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연령대의 피해 아동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한 방안 역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피해당사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연령대별로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제시. -> 학대예방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아동의 일상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적 생활환경 보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음.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녹색당	▶피해당사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의 확장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청소년 학대 피해자에 대한 후유증 치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학대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치유 서비스가 연령대별로 고루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그러나 치유서비스만으로 '초기 대응력'이나 '방어권'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더불어민주당	▶피해당사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일반화, 아동학대 대처 매뉴얼 보급 등을 제시. 그러나 아동(특히 저연령대 아동)의 자기보호 및 자기권리 주장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지적. -> 아동의 자기 권리 주장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한계적.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구체적 방안 제시 없음
정의당	▶피해당사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보장,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과 홍보 강화 제시. -> 학대에 방교육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을 뿐, 아동의 일상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인권적 생활환경 보장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음.
	▶피해 당사자의 연령대별 조건을 감안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학령기 아동의 경우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점은 긍정적. 영유아의 경우 건강검진제도 내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를 추가하여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 학교의 피해아동 보호 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 또한 긍정적.

## 5. 피해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에 대한 판단

[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질의한 목적

우리 너머본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외부 주체들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과 아울러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판단했다. 피해아동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을 밝히고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각 당이 ▲피해아동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대해서도 주목하는지 ▲그 대표적 원인 가운데 하나인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했다.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주목하는가	가정 복귀 조치로 인한 학대 반복의 위험성, 보호자 신고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 등을 제시. ->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가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갖게 되는 복합적 심리에 대한 분석은 부족.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가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지원책,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의 보완, 치유상담 인력 보강 등의 필요성 제시 ->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노동당	▶피해아동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주목하는가	아동의 학대에 대한 판단 기준 부재와 보복의 위험성을 이유로 제시. ->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가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갖게 되는 복합적 심리에 대한 분석은 부족.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가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 부모가 가해자일 때 분리 아동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구체적 방안으로 '시설 입소'나 입양 등을 중심으로 언급하고 있음. -> 시설 중심이 아닌 '원가정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음. 아동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부모인 보호자의 빈곤, 실업 등 경제적 문제를 지적한 노동당이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 정책에서는 이에 침묵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어 보임.
녹색당	▶피해아동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주목하는가	아동/청소년의 사회 경제적 취약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저조를 제시. ->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가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갖게 되는 복합적 심리에 대한 분석은 부족.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가	가정 내 성소수자 혐오로 인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 마련,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정책 실시를 제시한 것은 긍정적. -> 그러나 다양한 피해 아동과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제시가 없는 것은 아쉬움.
더불어민주당	▶피해아동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주목하는가	가족신고에 대한 부담, 가족해체에 대한 부담, 학대에 대한 이해 부족을 원인으로 제시. ->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 내 문제로만 파악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냄. 피해아동이 가해자와의 관계나 가해 장소의 특성에 따라 갖게 되는 복합적 심리에 대한 분석 역시 부족.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가	보호시설(쉼터)의 부족(수용 규모 250명에 불과)으로 피해아동이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문제점만 언급. -> 가족지원책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와 치료의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음.
정의당	▶피해아동이 신고를 주저하는 원인에 주목하는가	아동의 권리 주장 능력미약, 권력관계 하에서 가해자에 대한 문제제기의 어려움, 사적 공간에서의 폭력 입증의 어려움,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는 사회 분위기 등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정책에도 주목하고 있는가	긴급생계비 지원,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까지 연계해 피해가족의 자립 지원, 피해아동과 피해가족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지원 확대, 법률 지원 등을 제시. 가해자에 대해서도 2차 재학대를 막기 위해 치료, 상담, 교육 의무화 등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

## 6. 정부 대책의 한계에 대한 판단

[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 질의한 목적

우리 너머본부는 이 질문을 통해 ▲각 정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에만 매몰되지 않고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지 ▲비판에만 그칠 게 아니라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가	정부의 인식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 -> 정부 대책의 무엇을 한계로 보는지 구체적이지 않은, 모호한 평가만을 제시하고 있음.
	▶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부모/교사/의료진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대상 예방 교육 의무화 제시. ->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정책을 대책인 양 제시하고 있음. 가정폭력전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 추진 -> 예방이라기보다는 사후 처리 중심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종합적 대책 수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노동당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가	신고위주, 현장대응 위주 정책에 집중하고 있을 뿐, 아동학대의 구조적 원인에 착목한 정책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 -> 이번에 발표된 정부 대책은 이미 일어난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에 집중되어 있어 이 평가가 맞는지 의문.
	▶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돌봄 프로그램 마련, 사회복지 강화, 빈곤과 불평등 해소,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강화, 아동학대의 범주에 지나친 학습 강요도 포함하여 처벌,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 등을 대책으로 제시 -> 아동학대에 높은 학습부담을 포함시킨 것은 긍정적 발상 -> 경제적 빈곤의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어 경제적 해법 위주로만 대책을 제시하고 있음. 어린이, 청소년의 인권에 관한 종합적 이해와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춘 대책 수립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녹색당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가	사후 조치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
	▶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아동·청소년 권리 확장, 보호자의 사적 의무를 넘어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대책 제시.
더불어민	▶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재탕·삼탕 내용이 주된 것, 초등학생 장기결석자 전수조사 등 특

	알고 있는가	정 사건에 매몰된 1회성 대책이 중심이라고 평가한 것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것.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 학대사건 조기 개입 → 충분한 피해아동(가족) 보호·치료서비스 제공'에 충실한 종합 대책을 추진해야 함. -> 주로 조기발견과 피해아동치료에 집중. 정부대책과 무엇이 크게 다른지 알 수 없음.
정의당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고 있는가	기존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며,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부족하다고 평가.
	▶무엇에 집중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인프라 확충, 예산 확보,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 강조. -> 인프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못함. 관련 예산이 얼마가 확보되어야 하는지도 불명확.

## 7.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

[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요.

### ■ 질의한 목적

지난 2월 28일,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고 하며, 아동복지진흥원 설립을 포함한 총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우리 너머분부는 아동학대 예방 예산의 획기적 증가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실제 이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이에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각 정당이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각 정당이 마련한 정책들이 예산까지 고민한 구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더불어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는 우선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기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졌다.

### ■ 각 정당의 답변 분석

정당이름	질의 목적	답변 내용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
국민의당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답변 없음
	▶예산까지 판단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답변 없음
	▶예산까지 판단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녹색당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예산까지 판단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구체적 예산 언급 없음. 다만, 사회분야 자원 배정이 미흡하고, 아동복지 예산은 더더욱 후순위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예산을 OECD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구체적 우선순위 제시 없음
민주당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2015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572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2016년 아동학대 예산이 185억원만 편성된 문제점을 지적.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이 1,000억원 운운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의 전형이자 책임면피용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은 긍정적.
	▶예산까지 판단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구체적 예산 언급은 없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①아동보호전문기관 최소 45개 확충(55개 → 100개), ②피해아동 쉼터 대폭 확충(수용정원 250명 → 최소 1,000명), ③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④신고의무자 교육, ⑤부모교육·대응 메뉴얼 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함 -> 피해아동 발견과 보호기관 확충에 예산의 우선 순위 배정.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마련에 대해서는 언급 없고,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한계 보임.
정의당	▶여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타당성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언급 없음
	▶예산까지 판단한 구체적 정책을 갖고 있는가	구체적 예산 언급 없음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1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전국적으로 확대 / 공공기관화 2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종사자 확대, 처우 개선 강화 3순위: 부모교육(훈육방법) 개발과 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4순위: 피해아동 및 피해가족 지원 강화 5순위: 경찰, 전문기관, 쉼터,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 -> 피해아동과 가족 지원 강화를 우선순위에 올린 것은 긍정적. 쉼터 중심 아동보호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Ⅲ. 각 정당에 보내는 조언

각 정당의 답변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정당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형태의 아동학대’

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다른 장소에 일어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동학대를 부추기는 사회문화를 일소하고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정책은 제시하지 못했으며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치료와 시설 중심 보호 정책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예산 검토까지 마친 구체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아동학대 문제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문제를 분명하게 연결시켜 파악한 정당은 녹색당뿐이었다. 사후 발견 중심의 정부 대책의 한계를 견인하고 실효성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비판 역할이 주효하다. 이에 우리 너머본부는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인식 전환을 돕기 위해 각 정당에 아래와 같은 조언을 전달하고자 한다.

### ■ 국민의당에 보내는 조언

▶ 아동학대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쉽다. 가정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호시설, 일터 등 어린이·청소년의 다른 생활공간에서도 아동학대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다만 이와 같은 문제가 아동학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 대책이 비구체적이다. 아동학대의 다층적 원인,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지속 요인, 피해아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 피해아동과 가족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 학습과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아동학대는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수준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노동당에 보내는 조언

▶ 아동학대와 경제적 요인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지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학대 행위자 직업유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비율 역시 높음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가 가해자가 처한 빈곤, 실업, 불평등 같은 문제와 무관할 수는 없으나 이것만을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볼 경우 아동학대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을 세우려면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와 같은 기초 자료라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아동학대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로만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쉽다. 가정뿐 아니라 어린이집, 학교, 학원, 보호시설, 일터 등 어린이·청소년의 다른 생활공간에서도 아동학대는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다만 아동학대로 인식되고 있지 못할 뿐이라는 점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 아동학대의 다층적 원인,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지속 요인, 피해아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 피해아동과 가족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 학습과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아동학대는 어린이·청소년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 수준과 무관하지 않은 문제다. 어린이·청소년 인권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 녹색당에 보내는 조언

▶ 아동을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점, 아동 학대를 가정 내의 문제만이 아닌 전반적인 생활공간에서의 폭력 문제로 확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 특히 아동학대와 어린이·청소년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와 연관성을 주목한 점이 돋보인다.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학대까지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도 독보적이다.

▶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복합적 심리,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변인 등 아동학대에 집중한 종합적인 분석과 파악은 부족해 보인다.

▶ 주요 정책이 청소년 중심이다.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학대에 대한 종합적 파악과 대책이 필요하다. 가정,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각 장소별 아동학대에 대한 파악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지원정책,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피해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 ■ 더불어민주당에 보내는 조언

▶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문제, 아동학대가 발생한 이후의 조기발견과 사후 처리에만 대책이 집중되어 있다. 학대피해자인 아동이 자기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동은 자기보호능력과 자기 권리 능력이 부족하다고만 답변할 뿐, 그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는 놓치고 있는 점은 아쉽다.

▶ 아동학대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 분석, 아동학대 예방과 드러나지 않는 아동학대에 대한 답변이 없다.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를 신분 노출 우려의 문제로만 파악한 것도 표면적 판단에 불과하다.

▶ 아동학대 대책으로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장소, 아동학대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아동학대가 유지되는 원인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기초로 다시 한번 종합적 대책을 검토, 마련하기를 바란다.

#### ■ 정의당에 보내는 조언

▶ 훈육과 학대를 혼동하는 사회 문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자녀관의 문제를 지적한 점, 아동학대와 학령기 아동의 학생인권과의 연관성에 주목한 점,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정책을 고려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2014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좋으나, 그 내용에 온전히 기대는 것을 넘어 정의당만의 독자적인 분석과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 힘을 써주길 바란다.

▶ 아동학대의 다층적 원인, 아동학대 신고율이 낮은 이유,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문화의 지속 요인, 피해아동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조건, 피해아동과 가족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 학습과 분석을 기초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 아동학대 예방, 어떻게 가능한가 : 아동학대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해 살펴야 할 현황과 쟁점

- 배경내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1. 아동학대의 원인

○ [엽기적 학대사건의 여파] 2015년말 인천 11세 여아 아동학대 탈출 사건(속칭 '맨발소녀 사건')에 이어 2016년초 부천 초등생 아들 학대·시신훼손 사건, 홍성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부천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 광주 7세 여아 살해사건, 용인 친모에 의한 7세 여아 살해·암매장 사건, 평택 6세 아들 살해·암매장 사건(속칭 '원영이 사건'), 평택 친모가 7개월된 아들을 내던져 두개골 골절을 입힌 사건 등 최근 연일 터져나온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문제의 심각성에 경각심을 일깨운 대표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엽기적 사건'들의 충격만큼, 자칫 아동학대를 피해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로, 가해자는 '괴물부모'로, 학대행위는 '엽기적 행각'으로만 좁혀 이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크다. 이렇게만 아동학대를 인식할 경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가해부모를 엄벌하는 데에만 대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는 손을 놓게 된다. 또 다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멀어지게 된다.

○ [무엇이 아동학대로 주목받는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는 “보호자<sup>2)</sup>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통념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크고, 정부 대책 역시 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2011년 발생한 울산 울주군 ‘계모’ 학대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 2013년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살인사건 등은 이른바 아동학대가 ‘계모’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는 듯한 사회적 착각을 만들었고, 사회적 관심도 ‘비정한 계모’에 집중되었다. 2015년 초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에 의한 아동폭행 사건과 연이어 터져 나온 어린이집 학대 사건 역시 주요 아동학대의 장소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그리고 최근의 아동학대 사건은 주요 피해자 연령대인 미취학 아동과 유아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에만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대응이 집중되는 만큼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그에 따라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 집중되는 형편이다. 반면 2011년 교사의 초등학생 폭행 사건(속칭 ‘오장풍 교사 사건’)이나 2014년 교사의 고등학생 '800회 앉았다 일어서기' 근육 파열 사건 등은 사회적으로는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교사체벌' 사건으로만 인식되었다.

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의미한다.

○ **[단기적, 개별적 대책]**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올 때마다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극단적, 개별적 사안에만 반짝 집중되는 동안, 정부의 대응 또한 개별적 접근에 그쳐 왔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표되는 정부 정책 역시 전수조사, 학대 의심 장소에 대한 감시 강화(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 전담경찰관 배치, 가해자 처벌 강화(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 등), 예방교육 강화(학교나 어린이집에서의 예방교육 의무화) 등 비슷한 형태의 대응 패턴만 반복되고 있다.<sup>3)</sup>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발표된 정책마저도 여론의 관심이 잦아들면 꼬리를 감추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2015년 어린이집 학대사건 이후 대대적 정부 정책이 발표되고 여당도 당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수차례 당정협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 시행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었다. 게다가 올해 아동학대 대책 관련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26.5%나 줄었다.<sup>4)</sup> 최근 발표된 정부와 여당의 정책 역시 총선을 의식한 '무늬만 대책'이 되기 쉬운 조건이다. 이 같은 대책이 아동학대를 지속시키고 키우는 데 일조한다.

○ **[종합대책을 위해 필요한 질문]**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본질은 같고 장소만 바뀐 채 되풀이되는 아동학대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뿌리에 접근해야 한다. 아동학대는 보호자 자격이 없는 특정인이 저지르는 예외적 범죄가 아니라, '가해자와 아동학대에 관용적인 사회분위기와 이를 방치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삼각동맹' 하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발생, 유지, 재생산하는 원인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때 단기적인, 지엽적인 날개의 대책이 아닌 종합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필수적이다.

-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아주 예외적인 '괴물부모'일 뿐인가.
- ✓ 아동학대는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만 일어나는가. 학교, 학원, 보호시설, 일터 등 어린이·청소년의 다른 생활공간에서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는가.<sup>5)</sup>
- ✓ 물리적 외상이 있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만 심각한 아동학대인가. 학대에 대한 좁은 정의가 오히려 학대를 키우고 있지는 않은가.<sup>6)</sup> 이를 테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거나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아동의 '안녕'과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가 아닌가.
- ✓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영유아나 초등 연령의 어린이뿐인가. 정부 대책은 왜 미취학 아동과 영유아에만 집중되어 있는가. 오랜 아동학대의 결과로서 집에서 탈출한 청소년은 '아동학대'가 아닌 '가출이라는 탈선'의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상에조차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 아동학대를 목인하거나 부추기는 사회문화는 무엇인가. 아동 학대를 훈육으로 미화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는 않은가.<sup>7)</sup>
- ✓ 아동학대는 왜 신고가 되기 어려운가. 법적으로 신고 의무가 부여된 이들조차 신고를 꺼리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 아동학대의 피해자나 가족구성원이 아동학대를 견디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은 왜 아동학대를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가.

3) 2012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학교폭력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는 거의 대동소이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장소만 바꾸어 날개의 비슷한 대책만 쏟아내고 있을 뿐, 본질은 같은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4) <YTN, "돈주머니 줄이면서...아동학대 대책은 붓물"> 2016.02.25.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행정적 조치는 충분한가.8)

○ [가려진 아동학대]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전국 5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로 접수된 사례는 총 17,791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84.5%)<sup>9)</sup>, 이 가운데 다시 아동학대로 판단된 아동학대사례는 10,027건(66.7%)을 차지<sup>10)</sup>했다. 피해아동의 연령은 만 13~15세의 아동이 전체의 2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예 해당하는 만 10~12세가 21.0%,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의 아동이 18.6%로 나타났다. 미취학이나 영유아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이 낮아 학대가 알려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학대행위자의 직업유형은 무직이 3,250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관리직, 전문직, 기술공 및 준전문직, 사무직인 경우가 약 21.6%, 다음으로 단순노무직 1,650건(1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의 사회경제적 스트레스나 고립이 학대·재학대<sup>11)</sup>의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반드시 경제적 요인으로만 아동학대의 원인을 돌릴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는 점을 환기시켜 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 역시 양육태도 및 방법 부족이 10,076건(33.1%)이었으며,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한 경우는 6,200건(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는 3,050건(10.0%)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를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통념과 달리, 다른 생활공간에서 일어나는 아동 폭력에 대해서도 아동학대로 보고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2014년 아동학대 사례 중 시설 종사자에 의한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한다. 종사

5) 2014 9월, 강원 삼척의 한 중학생이 교사의 오리걸음, 운동장 뛰기, 엎드려뺨치기 등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교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사 체벌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을 적용한 이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원단체총연합회 측은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차원이었다며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다. <한겨레, "삼척 자살 중학생 체벌교사 불구속 입건... '간접체벌도 가혹행위냐' 놓고 논란">, 2014.11.12. 또한 같은 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를 조장하고 중용한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6) 서울시 구로구청은 김모 씨가 운영중인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뺨을 세게 때리거나 손바닥 등을 때린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아동학대로 판단, 6개월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모 씨가 사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함께 지내는 시설의 질서를 흐리는 아동들을 훈계하고 주의를 줘 올바른 행동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 보인다"면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김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법원 "훈육 차원 뺨 때린 것은 '아동학대' 아니다"> (2014.10.03.)

7)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회초리를 들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정치인 후원을 독려하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재하였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이 체벌을 미화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선관위에서는 '민원 등을 통해 홍보 포스터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 2016년부터는 이 포스터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지역 선관위 등에 2016년부터는 포스터 및 홍보물을 철거하라고 전달했다.'고 답했다.

8) 1979 세계에서 가장 먼저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스웨덴의 경우, 1980년대에 70%가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2011년에 이르러서야 3% 정도만이 체벌을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려 40여년에 이르는 이 같은 변화가 이루어졌던 데에는 1) 신체적, 굴욕적 처벌에 반대하는 지난 40년간 지속적인 교육과 정보제공이 있었고 2)신체적, 굴욕적 처벌에 반대하는 법과 함께 위기 아동을 대하는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과 같은 중요한 전문가 그룹에 대한 교육과 부모교육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3)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과 집단수준에서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은정(세이브더칠드런)의 <아동학대의 눈으로 바라본 체벌과 학생인권> 토론회(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2014.12.09) 토론문 참고.

9) 그 외의 사례는 동일신고는 93건(0.5%), 일반상담은 2,664건(15.0%), 해외발생사례는 9건(0.1%)으로 나타났다.

10) 나머지는 조기지원사례 1,783건(11.9%), 일반사례 3,215건(21.4%)로 분류됐다. 조기지원사례는 아동학대혐의가 없으나 고위험군으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외부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일반사례는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11)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치를 받았으나 다시 학대사건으로 접수된 경우.

자 유형별로는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 177건, 초·중·고교 직원 145건, 유치원교직원 99건, 기타시설 종사자 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로 '계모'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부모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 중 친부에 의해 발생한 사례가 4,531건(45.2%), 친모는 3,211건(32.0%), 계모와 계부는 각각 242건(2.4%), 189건(1.9%)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아동학대 발생률이 가장 높은 가족형태 역시 친부모가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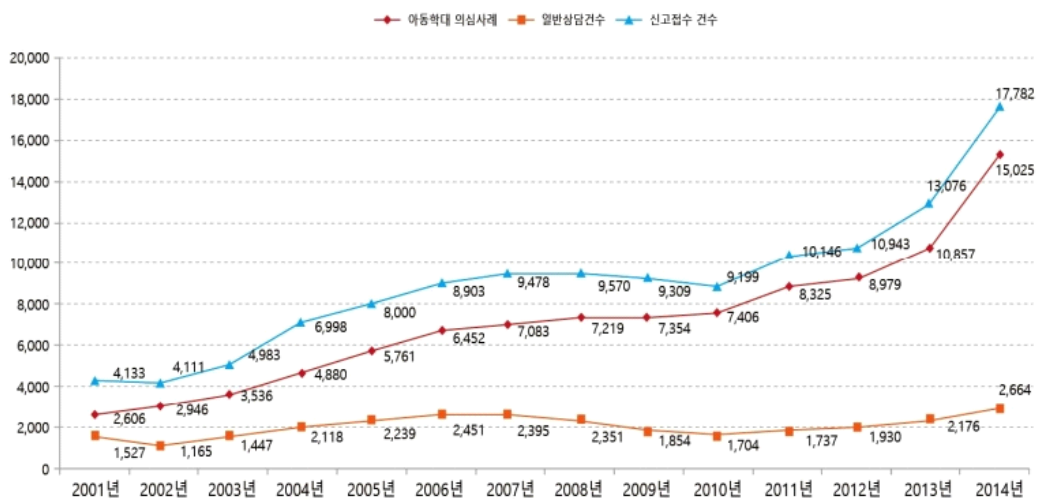
〈표 4-3〉 피해아동 가족유형

(단위 : 건, %)

친부모 가족	친부모가족 외 형태								대리양육형태				기타	파악 안됨	계
	부자 가정	모자 가정	미혼 부모 가정	재혼 가정	친인척 보호	동거 (사실혼 포함)	소년 소녀 가정	소계	가정 위탁	입양 가정	시설 보호	소계			
4,458 (44.5)	1,887 (18.8)	1,414 (14.1)	208 (2.1)	750 (7.5)	297 (3.0)	353 (3.5)	10 (0.1)	4,919 (49.1)	24 (0.2)	39 (0.4)	208 (2.1)	271 (2.7)	43 (0.4)	336 (3.4)	10,027 (100.0)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110쪽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 발생 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인지,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sup>12)</sup> 다만 신고된 아동학대보다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동학대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 물리적 외상이 심각한 아동학대 이외에 방임은 쉽게 발견되기 힘들고, 의심이 가더라도 신고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으며, 대응체계 역시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53쪽

12)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황은 신고가 활발한 국가에 견줘 많이 낮은 수준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한해 동안 우리나라 인구(5000만명)의 6배가 넘는 미국은 우리보다 225배 많은 신고(293만7052건, 46개주 집계)가 접수됐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한국의 19배(25만2962건)가 신고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가 적은 게 아니라, 신고가 적어서 나타나는 차이일 가능성이 크다. <의사들 열 중 일곱 "아동학대 심각 수준">, 2015.05.03.

○ **[학대를 키우는 인식]** 결국 학대 장소가 어디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떠나, 가해자가 보호 대상 아동을 어떤 이익의 성취를 위한 도구, 자신의 소유물, 아랫사람, 완성되지 않은 인격체로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인식할수록, '잘못했으면 맞아야 한다', '때려서라도 가르칠 건 가르쳐야 한다'라는 훈육관을 갖고 있을수록 아동학대의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들에서도 가해부모는 학대를 아이의 특정 행동에 대한 훈육이라 설명하고 있다.<sup>13)</sup> 이는 피해아동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으로, 단지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 아니라 가치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가해가 일어나는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사적(私的) 공간'으로 인식될수록 폐쇄성은 높아지고 그만큼 가해 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만큼 학대 위험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 **[종합적 분석의 필요성]** 나아가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보호자만 학대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 교사, 어린이집 원장, 아동보호시설의 원장 등 높은 사회적 지위와 권한을 가진 이들도 바로 그 지위와 권한으로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학대할 수 있다. 계모의 학대는 부각되는 반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는 없어서가 아니라 기삿거리가 잘 되지 않기에 주목받지 못한다. '애들을 잘 잡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라는 통념과 주위의 압력이 강할수록 교사에게는 학생을 때려서라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게 마련이다. '성적 인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로만 달려가는 입시학원에서는 강사에게도 동일한 압박이 가해진다. 따라서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고용조건, 가해자가 받고 있는 사회적 압박, 젠더,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아동학대 예방이 가능하다.

## 2.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다양한 장소들

○ **[학교에서의 학대 경험]** '학교+너머 운동본부'가 2013년 전국 초·중·고생 총 2,9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3 전국 학생인권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4명 중 1명 꼴로 체벌이 자주 있거나 가끔 있다고 답했고 언어폭력 경험률은 조금 더 비율이 높았다.

언어폭력·체벌 경험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언어폭력	238 (8.2%)	599 (20.6%)	840 (28.9%)	1228 (42.3%)
관리자(교장/교감)나 교사들의 체벌	180 (6.2%)	496 (17.0%)	868 (29.8%)	1368 (47.0%)

이어 2014년 전국 중·고생 5,8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전국 학생인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교사에 의한 체벌을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의 경우도 자주 또는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무려 45.8%에 이르렀고, '앉았다

13) 대표적으로 2014년 10월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에서 상습적인 학대를 가한 양모는 '아이가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꽂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2015년 1월 인천 송도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 폭행 사건에서 어린이집 교사는 '급식판에 남긴 김치를 먹게 하자 아이가 뱉어냈다'는 이유로, **평택 6세 아들 살해·암매장** 사건에서 부모는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가했다.

일어서기' 등 기합성 체벌의 경우, 자주 또한 가끔 있다고 답한 학생이 60%로 올라섰다.

교사에 의한 손발이나 도구를 활용한 체벌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957	1716	1470	1698	5841
백분율	16.4%	29.4%	25.2%	29.1%	100.0%

교사에 의한 앉았다 일어서기,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손들고 서있기, 무릎꿇기 등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체벌					
	자주 있다	가끔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총계
빈도	1525	1979	1202	1132	5838
백분율	26.1%	33.9%	20.6%	19.4%	100.0%

○ [학대가 잦은 장소] 같은 2013년 조사에서 어른들의 체벌이나 언어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와 집의 발생률이 거의 유사하게 집계됐다. 학원의 경우에도 체벌과 언어폭력이 자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체벌/언어폭력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곳					
		학원		집	합계
<b>전체</b>		<b>1414 (70.8%)</b>	<b>298 (14.9%)</b>	<b>286 (14.3%)</b>	<b>2921 (100%)</b>
<b>학교</b>	초등	64 (38.3%)	41 (24.6%)	62 (37.1%)	290 (100%)
	중학교	415 (63.7%)	132 (20.3%)	104 (16.0%)	985 (100%)
	인문고	527 (77.5%)	72 (10.6%)	81 (11.9%)	976 (100%)
	특성화고	348 (81.7%)	45 (10.6%)	33 (7.7%)	551 (100%)
	특목고	50 (84.7%)	5 (8.5%)	4 (6.8%)	77 (100%)
<b>설립 별</b>	국공립	1165 (68.7%)	265 (15.6%)	265 (15.6%)	2500 (100%)
	사립	249 (82.2%)	33 (10.9%)	21 (6.9%)	421 (100%)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는 745건으로 전체의 7.4%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초·중·고 교 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145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체벌/언어폭력 경험률에 비해 아동학대로 신고·접수·판단되는 비율이 극히 낮음을 알 수 있다.

○ [학대의 목적]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에 의해 금지된 체벌조치 아동의 주요 생활 환경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각 장소별로 주목해야 할 요인

은 다양할 수 있으나 훈육을 명분으로 한 아동학대에 우리 사회가 얼마나 관용적인가를 알 수 있다. 너머본부가 직접 체벌을 당한 경험과 아울러 목격한 경험도 함께 물은 이유는 체벌이 피해아동 당사자에게만 모욕감과 공포심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목격한 아동들에게도 '맞아도 괜찮은 존재'라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동일한 모욕감과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안겨주는 아동학대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역시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행위'를 아동학대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가정폭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폭력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특히 아동이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전시성 체벌'은 '힘이 약한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잘못하면 때려도 괜찮다'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도 싸다'와 같은 잘못된 가치관을 길러주며,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또래폭력과 같은 다른 폭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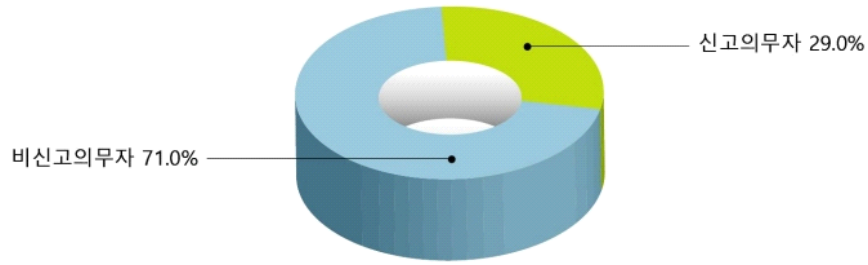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낮은 이유

○ **[신고의무자 범위]**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신고의무자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사, 학원강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 총 24개 직군<sup>14)</sup>이 포함된다. 이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전체 아동학대 신고 건수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많지 않아 문제다. 지난 2월말 발표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부대책에도 ▲신고 활성화 ▲신고의무자 확대(약 3천명) ▲과태료 부과 강화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의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는 뚜렷하지 않다.

○ **[신고의무자의 신고율]**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사례로 신고접수된 건 가운데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4,358건(29.0%),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접수 건수는 10,667건(71.0%)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 가운데 초·중·고교 직원이 1,998건(13.2%)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그 다음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700건(4.7%),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75건(1.8%), 보육교직원 273건(1.8%) 순으로 나타났다. 비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가 3,486건(23.2%)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찰 2,204건(14.7%), 부모 1,991건(13.3%)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률이 높다고 해서 곧장 그 직군의 아동학대 민감성이 높다고는 판단하기 힘들다. 각 직군의 종사자 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직군별 신고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 역시 다르기 때문이다.

집계 기간의 차이를 감안하고 보면,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2014.09.29)과 대국민 홍보 캠페인 이후 피해아동 본인이나 부모의 신고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4) 범위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응급구조사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유치원 교직원과 강사 ▲의료기사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정신의료기관,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초중고 학교 교직원, 전문상담교사, 산학겸임교사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아이돌보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그림 2-4〉 신고자 유형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68쪽

〈표 2-6〉 신고자 유형

(단위: 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총합
초·중·고교 직원	1,393(12.4)	595(15.7)	1,988(13.2)
의료인	93(0.8)	30(0.8)	123(0.8)
아동복지시설종사자	238(2.1)	37(1.0)	275(1.8)
장애인복지시설종사자	19(0.2)	5(0.1)	24(0.2)
보육교직원	206(1.8)	67(1.8)	273(1.8)
유치원교직원,강사	21(0.2)	22(0.6)	43(0.3)
학원강사	26(0.2)	0(0.0)	26(0.2)
소방구급대원	20(0.2)	8(0.2)	28(0.2)
성매매피해시설상담소종사자	1(0.0)	1(0.0)	2(0.0)
한부모가족복지시설종사자	6(0.1)	4(0.1)	10(0.1)
가정폭력상담소보호시설종사자	133(1.2)	41(1.1)	174(1.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77(5.1)	123(3.3)	700(4.7)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04(0.9)	47(1.2)	151(1.0)
가정위탁지원센터종사자	26(0.2)	1(0.0)	27(0.2)
아동복지전담공무원	97(0.9)	7(0.2)	104(0.7)
건강가정지원센터종사자	13(0.1)	5(0.1)	18(0.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종사자	18(0.2)	2(0.1)	20(0.1)
정신보건센터종사자	53(0.5)	25(0.7)	78(0.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17(0.2)	3(0.1)	20(0.1)
응급구조사	2(0.0)	0(0.0)	2(0.0)
의료기사	0(0.0)	0(0.0)	0(0.0)
청소년시설,단체종사자	141(1.3)	44(1.2)	185(1.2)
청소년보호센터,청소년재활센터종사자	10(0.1)	4(0.1)	14(0.1)
아이돌보미	0(0.0)	0(0.0)	0(0.0)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자원인력	0(0.0)	73(1.9)	73(0.5)
소 계	3,214(28.6)	1,144(30.3)	4,358(29.0)
비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전 (2014.1.1.~2014.9.28.)	아동학대처벌법 시행이후 (2014.9.29.~2014.12.31.)	총합
아동본인	148(1.3)	48(1.2)	628(4.2)
부모	1,297(11.5)	694(18.4)	1,991(13.3)
형제,자매	43(0.4)	67(1.8)	110(0.7)
친인척	385(3.4)	151(4.0)	536(3.6)
이웃,친구	932(8.3)	270(7.1)	1,202(8.0)
경찰	1,992(17.7)	212(5.6)	2,204(14.7)
종교인	16(0.1)	4(0.1)	20(0.1)
사회복지관련종사자	2,925(26.0)	561(14.8)	3,486(23.2)
낯선사람	101(0.9)	92(2.4)	193(1.3)
익명	37(0.3)	61(1.6)	98(0.7)
기타	155(1.4)	44(1.2)	199(1.3)
소 계	8,031(71.4)	2,636(69.7)	10,667(71.0)
계	11,245(100.0)	3,780(100.0)	15,025(100.0)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68쪽

○ [신고자=가해자? 옹호자?]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이 왜 비신고의무자에 비해 낮은 것일까. 역설적으로 신고의무자 범위를 보면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이고 주요 가해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 신고 의무자 가운데는 대개 가해자가 되기 쉬운 위치에 있고, 실제 주요 가해자이기도 한 직군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폭력적 훈육에 관용적인 문화에 익숙한



신고 의무자가 자신의 가해행위는 허용하면서도 타인의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아동학대의 징후를 포착, 신고하는 경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로부터 1년이 넘은 경우가 전체의 64.9%에 이른다는 것은 신고의무자의 초기 대응력이 현저히 낮음을 방증한다. 따라서 '학대 행위' 중심의 형식적 학대에방교육이 아닌 인권감수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하고<sup>15)</sup>, 아동의 생활공간 전반에서 체벌을 포함한 아동학대에 대한 전면적 금지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표 5-7〉 신고의무자 신고 시 최초 아동학대 발생시기

(단위 : 건, %)

신고자 유형 \ 시기	1주일~1개월	3~6개월	1~3년	4년 이상	계
신고의무자	574(17.8)	560(17.3)	1,307(40.5)	789(24.4)	3,230(100.0)
비신고의무자	1,269(18.7)	1,240(18.2)	2,643(38.9)	1,645(24.2)	6,797(100.0)
계	1,843(18.4)	1,800(18.0)	3,950(39.4)	2,434(24.3)	10,027(100.0)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185쪽

○ **[피해아동의 연령대에 따른 이중적 잣대]** 초·중·고 교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의 경우, 피해자가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연령대가 중학생 또는 초등 고학년 연령대라는 사실은 아동학대가 ‘생활지도’ 또는 ‘교사/보호자와 학생/피보호자의 힘겨루기’ 차원에서 학대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15) 아동학대 행위 유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아동학대에 관한 제한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한편으로는 기여하면서도, 행위 중심으로만 아동학대를 판단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폭력에 관한 민감성, 아동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으로 전면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행위는 아래와 같다.

[신체학대]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활취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에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정서학대]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용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 (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학대] •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연령(만)	보육교직원	유치원교직원	초·중·고교 직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계
1세 미만	2(0.7)	0(0.0)	0(0.0)	0(0.0)	0(0.0)	2(0.3)
1~3세	177(60.0)	11(11.1)	0(0.0)	3(1.7)	0(0.0)	191(25.6)
4~6세	103(34.9)	88(88.9)	3(2.1)	9(5.1)	1(3.4)	204(27.4)
7~9세	6(2.0)	0(0.0)	18(12.4)	37(20.9)	10(34.5)	71(9.5)
10~12세	7(2.4)	0(0.0)	52(35.9)	53(29.9)	7(24.1)	119(16.0)
13~15세	0(0.0)	0(0.0)	62(42.8)	54(30.5)	9(31.0)	125(16.8)
16~17세	0(0.0)	0(0.0)	10(6.9)	21(11.9)	2(6.9)	33(4.4)
<b>계</b>	<b>295(100.0)</b>	<b>99(100.0)</b>	<b>145(100.0)</b>	<b>177(100.0)</b>	<b>29(100.0)</b>	<b>745(100.0)</b>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26쪽

나아가 아래 표에서도 드러나듯,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피해아동의 연령과 피해 장소에 따라 대응이 달리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초·중·고 교원에 대해서는 '지속관찰'이 다른 직군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유아나 저연령대의 아동에 대해서는 "그 어린애한테 손 델 데가 어디 있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대응이 상대적으로 강경한 반면, 청소년에 대해서는 "애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으면 그랬겠냐"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가해자를 관용적으로 대하는 이중적 잣대가 신고의무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로도 작동하는 것이다.

〈표 5-56〉 시설 종사자 유형별 학대행위자 최종조치결과

(단위 : 건, %)

종사자 유형	조치결과	지속관찰	아동과의 분리	고소·고발·사건 처리	만나지 못함	계
보육교직원	73 (24.7)	14 (4.7)	208 (70.5)	0 (0.0)	295 (100.0)	
유치원교직원	19 (19.2)	15 (15.2)	65 (65.7)	0 (0.0)	99 (100.0)	
초·중·고교 직원	116 (80.0)	1 (0.7)	28 (19.3)	0 (0.0)	145 (100.0)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87 (49.2)	46 (26.0)	44 (24.9)	0 (0.0)	177 (100.0)	
기타시설 종사자	10 (34.5)	2 (6.9)	16 (55.2)	1 (3.4)	29 (100.0)	
<b>계</b>	<b>305 (40.9)</b>	<b>78 (10.5)</b>	<b>361 (48.5)</b>	<b>1 (0.1)</b>	<b>745 (100.0)</b>	

출처: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235쪽

○ [신고의무자의 불안정한 위치] 신고의무자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고 불안정한 지위에서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이들이 아동과의 안정적인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사후대책까지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란 힘들다. 신고 의무자가 아동의 총체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으려면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 부담이 경감되어야 하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연결할 만한 지역사회 자원이 풍성하게 조성되어 있어야 한다.

어린이집, 보육시설, 학교 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 동료의 학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동료 의식'이 먼저 작동할 수 있고 ▲기관의 명예나 이익(기관 폐쇄나 운영정지 시 일자리

를 잃을 우려)을 우선시할 수도 있고 ▲기관장의 은폐 지시를 어길 경우 신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공익제보자'를 내부고발자로 낙인·배제시키는 문화 등에 의해 신고를 꺼리게 되기도 한다. 실제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더라도 신고의무자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고, 비신고의무자는 가정 내 학대뿐 아니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대행위자 가정, 친인척의 집 등 가정 외에서 발생하는 학대를 더 많이 발견하는 경향을 보였다.<sup>16)</sup> 신고의무자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의 학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거나 신고를 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기관장이 학대 사실을 은폐할 경우 가중 책임을 묻고, 기관 종사자를 공익제보자로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규정한 공익신고의 범위에 학교와 학원에서의 아동학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sup>17)</sup>할 수 있으나, 개별 법률에서 이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신고자 보호와 위반시 벌칙 규정을 두는 것이 더 두터운 보호 방안이다. 2015년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등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42조의2), 아동학대 행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가능(45조), 아동학대를 하거나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취한 경우 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46조)나 자격취소(48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sup>18)</sup>, 초·중등교육법이나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서는 아동학대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표 5-3〉 신고의무자 여부에 따른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관계	신고자유형	건 수	
		신고의무자	비신고의무자
대리 양육자	부, 모의 동거인	57(1.8)	89(1.3)
	유치원교직원	2(0.1)	97(1.4)
	초·중·고교 직원	20(0.6)	125(1.8)
	학원 강사	5(0.2)	75(1.1)
	보육교직원	73(2.3)	222(3.3)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48(1.5)	129(1.9)
	기타복지시설 종사자	2(0.1)	27(0.4)
	베이비시터	0(0.0)	7(0.1)
	위탁부	2(0.1)	3(0.0)
	위탁모	3(0.1)	4(0.1)
	소계	212(6.6)	778(11.4)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180쪽

○ [신고 이후에 대한 불확신]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의 경우 ▲'그래도 아이는 부모 손에 크게 가장 낫다'와 같은 오랜 통념 ▲신고해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 의한 보복이나 불이익 위험 ▲아동이 시설로 보내지더라도 생활환경이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 등이 신고를 꺼리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학대의 징후를 발견한 이들조차 어떤 선택이 최악이고 차악인지 확신할 수 없어 문제 해결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실제 아동학대 신고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로 판정되더라도 조치의 대부분은 '원가정 보호'와 지속관찰이라는 점<sup>19)</sup>을 보면, 신고의무자의 우려가 현실에 비해 과장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개별 사건

16)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38쪽.

17)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관련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와 인허가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와 관련된 법률에는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입양특례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 있다.

18) 물론 행정처분만으로는 벌칙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19)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학대행위자에게 취해진 최종조치결과는 지속관찰이 7,461건(74.4%)으로 가장 많고 고소·고발·사건처리 1,508건(15.0%), 학대행위자 만나지 못함 550건(5.5%), 아동과 분리 508건(5.1%) 순으로 나타났다.

의 성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해야 하겠지만, 아동보호 조치가 '원가정 보호'를 우선시하다 보니 재학대 위험으로 아동을 내몰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가해자와 분리시키는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에까지 이르는 경우를 살펴보면, 4호(피해아동 보호 위탁)가 총 28건(52.8%)으로 가장 높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들이 '신고 이후 피해아동의 삶은 안정될 것인가?'라는 우려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아동보호 환경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sup>20)</sup> 대표적으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분리, 쉼터나 보호시설로 이동시키는 현행 절차에서 벗어나 가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방식에서의 획기적 전환을 검토해볼 수 있다.<sup>21)</sup>

〈표 4-49〉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단위: 건, %)

청구인	결정 실건수	기각 실건수	총 실건수	임시보호 결정	임시보호 기각	청구 내용									총계 (중복 집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판사 직권	8	-	8	7	1	0 (0.0)	1 (10.0)	1 (10.0)	7 (70.0)	1 (10.0)	0 (0.0)	0 (0.0)	0 (0.0)	0 (0.0)	10 (100.0)
아동보호전문 기관장	18	2	20	14	6	0 (0.0)	12 (32.4)	7 (18.9)	17 (45.9)	1 (2.7)	0 (0.0)	0 (0.0)	0 (0.0)	0 (0.0)	37 (100.0)
변호사	4	0	4	-	4	0 (0.0)	1 (16.7)	1 (16.7)	4 (66.7)	0 (0.0)	0 (0.0)	0 (0.0)	0 (0.0)	0 (0.0)	6 (100.0)
<b>총계</b>	<b>30</b>	<b>2</b>	<b>32</b>	<b>21</b>	<b>11</b>	<b>0 (0.0)</b>	<b>14 (26.4)</b>	<b>9 (17.0)</b>	<b>28 (52.8)</b>	<b>2 (3.8)</b>	<b>0 (0.0)</b>	<b>0 (0.0)</b>	<b>0 (0.0)</b>	<b>0 (0.0)</b>	<b>53 (100.0)</b>

- 1호: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3호: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 7호: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8호: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기관, <2014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 166쪽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에 대한 고민] 현행 법적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금지의 법적 취지를 고려할 때 연예인 기획사, 아르바이트 업체 등 고용·업무 관계에 있는 이들도 예방의무와 신고의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신고의무자에 '배우자'나 형제자매든 다른 '가족구성원'을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다른 배우자의 자녀 학대나 부모의 형제자매 학대를 신고하고 보호를 요청하는 것은 현재의 지배적 가족관에서는 가정을 깨는 일이라는 도덕적 부담이 크다. 정상가족에 관한 통념이 센 만큼, 아동학대를 드러내는 것은 더 큰 부담을 지우기 쉽다. 거기에 자녀를 학대하거나 형제자매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경제적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경우 신고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들의 경우 또 다른 학대 피해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신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 고민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학대 가해자를 제외한

20)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쉼터는 전국 41개소,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장애가 있거나 특성화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가야 하는 쉼터 역시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TN, "돈주머니 줄이면서...아동학대 대책은 뭇물"> 2016.02.25.

21)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1항 1호에는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가 임시조치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으나, 대개는 피해아동을 일시보호시설로 이동시키고 나중에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 4. 피해아동의 대응력 강화를 위한 대책

○ **[아동의 신고]** 2015년 국내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진 스페인의 아동학대 신고 광고판은 아동의 눈높이에서만 학대받는 아동의 얼굴이 보이게끔 특수 디자인되어 있으며, 아동 당사자의 신고를 적극 장려하고 있다. 주변 이웃이나 신고 의무자들이 아동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학대사건의 특성상 피해 당사자인 아동이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리고 보호를 요청하지 않으면 은폐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 본인에 의한 학대 신고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 이후 높아지는 추세다. 2014년 1월부터 9월 28일까지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148건(1.3%)이었으나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무려 480건(12.7%)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아동학대가 범죄 또는 아동 인권 침해라는 사회 인식이 높아짐과 아울러 홍보·교육 등으로 인해 아동 스스로 권리의식이 향상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의 대상]** 아동학대와 관련된 정부의 홍보물이나 방송 송출물 등을 보면 ‘보호자’나 성인, 예비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로 담고 있을 뿐, 아동에게 학대 사실을 신고할 것을 직접적으로 독려하는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경우에도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에서 예방교육을 의무화<sup>22)</sup>하고 있을 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인권교육은 부재한 형편이다. 아동복지법 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게끔 규정되어 있는데, 오는 2016년 6월 30일부터는 해당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기관에 매년 1회 보고하게끔 하여 예방교육을 강화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긍정적이나, 아동 대상의 예방교육이 ‘가정에서의 학대’에만 초점을 맞춰, ‘나쁜 짓 하면 신고하세요’ 정도의 내용으로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초기 대응력을 높이는 일상의 경험]** 아동 본인의 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력은 학대가 지속된 이후 이루어지는 신고에 못지않게 아동학대를 유지, 확대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변인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는 경험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인권이 무시되는 공간에서는 인권침해가 당연시되고, 타인은 물론 자신에게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서도 둔감해지기 쉽다. 또한 아동이 직접 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에 대해 신고나 증언을 할 수 있으려면 일상적으로 부당한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언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야 한다. 다른 부당한 일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일어난 폭력에 대해서만 발언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정한 상황에서만 신고하라’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전면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부당한 일에 대해 두려움 없이 발언할 수 있을 때 폭력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대응하고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또래들의 증언과 초기 대응도 중요하다. 인천 어린이집 학

22)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는 2015년 3월 아동복지법에 신설되었다.

대 사건의 경우에도 또래 어린이의 증언으로 사회에 알려질 수 있었다. 아동의 의사표현이나 증언, 감정에도 정당한 무게를 부여하는 성인들의 태도를 일상적으로 경험할 때, 아동들이 폭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5. 피해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에 대한 조명

○ [피해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1 - 증언력] 대개 아동의 증언력은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사회적 통념과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일관성이 없으며, 이야기에 과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어린 존재의 증언에 의혹을 제기하는 사회적 통념에 의해 의심을 받기 쉽다. 아동은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한 호소가 신뢰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메시지를 일상적으로 받고 있다. 이는 성인(어른 또는 비청소년)이 아동을 대하는 일상적 태도로 인해 학습된 결과이다. 특히 아동학대 피해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동의 경우, 자신의 증언 내용이나 감정, 의사가 존중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힘들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가해자는 대개 이렇게 말한다. '네가 잘하지 그랬니?' 줄곧 이와 같은 주위의 반응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어떤 행동이 학대의 원인이라고 믿도록 학습 받아온 피해자가 학대를 피해 또는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는 힘들다.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불안 역시 증언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된다. 실제 아동학대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진술만으로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대가 이어지는 일도 있기도 하다.

○ [피해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2 - 장소별 위치성과 복합적 마음]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하는 피해아동의 마음은 복합적이다. 자기를 학대하는 부모를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 자기가 부모를 힘들게 만들었는지 모른다는 죄책감, 학대 신고가 부모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도덕적 부담, 자기가 잘못하지 않으면 관찮아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 아동양육을 부모 개인의 가치관에 맡기는 사회 분위기로 인한 심리적 압박, 또래폭력에는 엄격하지만 어른/보호자에 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교육기관의 메시지에 따른 혼란, 다른 가족구성원까지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나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일지 모른다는 위축감, 원가정이 깨질 경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신고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다시 가해자와 함께 살아야 하고 학대가 심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대를 참아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의 경우는 피해자의 복합적 감정에 대한 지지와 피해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이 함께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sup>23)</sup>

보육원과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 가정을 대신한 대리 양육 환경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잡한 심경에 놓인다. 원가정도 제공하지 못한 보살핌을 제공해준다는 고마움, 신고할 경우 함께 생활하는 아동들이 힘들어질 수 있을 거라는 불안, 여기서 나가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부담감 등이 얽히기 때문이다.

유치원, 학교 등 보육보다는 '교육'에 더 무게가 실린 공간에서는 가해자가 가진 '공식적 권위'가 강하기 때문에 아동 자신이 그에 도전하는 학대 신고를 하기란 힘들다. 나아가 가해자나 가해자의 동료에게 찍힐 경우 앞으로 남은 학교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걱정, 학대보다는 '교사의 생활지도'로 해석되는 지배적인 학교 분위기에 따른 압박감, 성적 등을 이윽

23)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일반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이들이 내는 벌금으로 마련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 판매 수입인 '복권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적 예산으로 피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체계를 충분히 만들어내기란 불가능하다.

로 교사의 학대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하는 가족들의 태도에 따른 혼란 등에 따라 신고를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 [피해 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3 - 공식적 메시지] 현행 아동복지법은 5조(보호자 등의 책무) 조항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체벌과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명백한 금지를 규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학교 현장에서 아동복지법보다 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sup>24)</sup>의 경우,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의 체벌이나 언어폭력 등의 정신적 폭력까지는 허용하는 듯이 해석되고 있으며, 손발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통념’에 따라 ‘경미한 체벌’과 ‘심각한 폭행’을 구분하여 후자의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다. 교육청 역시 체벌 관련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재발 방지 약속’을 받는 정도로만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높다. 민법 915조<sup>25)</sup>에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의 경우에도, 자녀에 대한 상당한 범위 내의 체벌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로 이어지고 있다. ‘법’이 정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를 해석하는 기관이 아동학대에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아동의 경우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아동학대로서 인지하기 어렵고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 본인이나 부모, 형제자매에 의한 학대 신고율이 높아진 것은 아동학대를 대하는 사회의 ‘공식적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려준다. 따라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명백한 법 개정과 법 해석이 뒤따라야 ‘아동학대에 관한 공식적 메시지’를 바꿀 수 있다. 더불어 아동의 인권을 구체적,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입법으로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실제 너머본부가 주관한 <2014 전국 학생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미제정 지역에 비해 체벌을 포함한 학생인권 침해 발생률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고통에 대한 감각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어느 양육·교육기관이든, 어느 지역이든 동일한 기준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학교법(초·중·등교육법 개정)과 아동인권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 [피해 아동이 학대를 견디는 이유 4 - 피해자의 가해자화] 폭력에 익숙해지다 보면 학대 피해 아동이 타인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악순환 현상도 생겨난다. 학대 피해자가 모두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학교폭력의 가해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까운 보호자나 형제자매 등에 의한 학대 피해 경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폭력에 둔감해지다 보면 자신이 경험하는 학대를 공적 기관에 신고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학교폭력 대책은 가해학생 엄벌 쪽에 무게가 실려 있다. 정부와 사회가 외면해온 학대의 피해자가 저지른 ‘가해행동’에는 가차 없이 칼날을 들이대는 모양새다. 가해학생의 회복과 교육을 돕는 방향으로 학교폭력예방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 6. 현 정부의 아동학대 대책에 대한 평가

24) “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5) 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2.25 정부대책의 기초]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대책’의 초점은 미취학 아동과 영유아 중심으로 ‘조기 발견’에 맞추어져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이용 기록이 전혀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양육환경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고, 교육부는 장기결석이나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sup>26)</sup> 그 외에도 ▲전담 경찰·검사 배치 등 전문인력 확충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연계 체계 구축으로 협조체계 강화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비등 긴급지원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권리교육 및 부모교육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기보다는 최근 밝혀진 부모의 아동학대·사망 사건에만 초점을 맞춘 지엽적 대책이며, 예방보다는 ‘사후대응’에 초점을 맞춘 능동형 대책이며, 기존에 있던 대책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남은 대책에 불과하다.

○ [원인 분석 없는 대책들] 다른 정당, 지자체, 경찰 차원에서 발표되고 있는 아동학대 대책 역시도 신고 포상금 지급, 아동학대 수사팀 증원,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예방교육 실시, 실태조사, 피해아동 쉼터 설치 등 비슷한 정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대책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엇이 아동학대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고, 왜 신고율이 낮은가에 대한 분석없이 포상금만 지급한다고 신고가 활성화될 리 없고, 수업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일상의 메시지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예방교육이 성공할 리 없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질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학대 예방 정책은 가정이 아닌 아동의 생활 공간 전반에서 아동 훈육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 측면, 피해자 측면,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공간별 특성까지 두루 감안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영역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질문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해자는 자녀, 학생 등 자신의 보호 하에 있는 어린이·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는가</li> <li>● 가해자는 양육, 훈육, 교육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li> <li>● 계모, 빈곤층 등 특정 가해자에게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가</li> <li>● 주요 가해공간은 사회적 감시와 지원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가</li> </ul>
피해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피해자는 자기방어를 위한 구체적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가</li> <li>● 피해자는 가해자의 '학대행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고 생각하고 있는가</li> <li>● 피해자는 가해자 이외에 신뢰할 만한 다른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는가</li> <li>● 피해자의 다른 가족구성원, 학급친구, 보육시설의 또래 등은 학대행위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가</li> <li>● 피해자는 법적 보호 절차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li> <li>●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구할 경우, 감당해야 할 삶의 변화나 불이익이 얼마나 큰가</li> <li>●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같은 학대 행위에 대한 다른 사회적 반응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li> </ul>

26) 제때 취학하지 않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있으면 학교가 발생 첫날 가정에 연락, 사흘째부터는 가정방문과 학생 직접 면담, 이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학대가 의심되면 곧바로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대책이 2016년 신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가해자, 피해자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방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가</li> <li>• 훈육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체벌에 대한 명백한 법적 금지가 이루어져 있고, 관련 기관이나 사법부는 체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sup>27)</sup></li> <li>•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자의적 징계권이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지 않은가</li> <li>• 학대 피해 어린이·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가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가</li> <li>• 피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 보장과 불이익 금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가</li> <li>• 아동학대 문제를 비롯한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관장하는 종합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li> <li>• 어린이·청소년 인권을 관련 법으로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li> <li>• 교육, 정치, 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인권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li> </ul>
----	--

## 7. 새누리당 아동학대 예방 예산안에 대한 평가

○ **[예산 증액의 필요성]** 새누리당이 발표한 것처럼, 국가 총예산과 GDP 규모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약 3배 정도 규모가 크지만, 아동학대예방예산(약 1조 3,588억)은 한국(약 185억)에 비해 약 73.4배 높다. 전체 정부예산 중 아동학대 예방 편성비율 또한 일본은 전체의 0.13%로 한국(0.0047%)에 비해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8)</sup> 게다가 아동학대 예방 예산이 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과 ‘복권기금’에서 충당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일반 국가예산으로 편성하고 그 규모를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 **[새누리당의 예산 우선순위]**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아동학대 대응 및 아동권리 옹호전담부서 역할을 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신설 ▲피해아동 지원 특별법 제정 ▲아동학대 대응 관련법 개정(피해아동과 가해자에 대한 심리정서치료 명령을 추가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피해(우려)아동 식별이 가능토록 하는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신설, ▲거주형 치료병원 설립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1천억의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는 보면, 예산의 40% 가까이가 아동복지진흥원이라는 기구를 신설하는 데 배치되어 있다. 종합대책을 추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이 기구의 구체적 역할이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로 나갈 예산이 4백억이나 배치된 것은 놀랍다. 트라우마네트워크 구축이 피해아동을 우범화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50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도 하다. 피해아동 쉼터, 거주형 치료병원, 위탁가정 활성화를 염두에 둔 Aftercare System(사후 지원 체계) 등의 예산도 부모의 심한 학대로 더 이상 원가정에서 생활이 힘든 아동학대 사례만을 염두에 둔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피해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에 대한 고민은 전무해 보인다. 새누리당 역시 최근 떠오른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엽적 대책을 발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쉼터나 보호시설과 같은 ‘시설 보호 중심 체계’를 계속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원가정 보호’를 중심으로 실질적 보호환경을 구축할 것인가에

27) 동일한 효력을 가진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국제인권규범 역시 체벌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모든 상황에서의 체벌을 전면 금지할 것을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이 때 체벌이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벌뿐만 아니라 모욕적이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포함하는 것’이다. 2009년, 유엔의 ‘고문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 역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에 명시된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의 ‘고문 등’은 훈육 수단으로서의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28)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약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5.02.28.

대한 고민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예산 규모 확충(안)**

(단위 : 백만원)

2016년 예산 (185억)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1,383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4,245
학대피해아동쉼터	2,934
계	18,562



(단위 : 백만원)

예산 규모 증가 (1,000억)	
아동복지진흥원	39,462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34,499
학대피해아동쉼터	15,039
Aftercare System 지원	1,000
대국민 홍보	2,500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지원	5,000
거주형 아동치료 병원 환경 조성	2,500
계	100,000

## 국민의당 답변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학대는 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사회적 편견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전국아동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75.5%(8841명)는 친부모였으며,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79.8%(93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무지와 자녀가 마치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사라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4년 통계청의 피해아동의 초기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보호가 6,666건, 격리보호가 2,610건으로 원가정보호가 격리보호보다 약 3.1배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를 확인하더라도 가해자가 친부모라는 특성 때문에 학대가정으로 복귀하여 또 다시 학대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주요장소		발생원인
정서학대	가정 대부분(80%)	집근처 또는 길가,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학원, 학교, 친척·이웃집 등 (20%)	훈육을 이유로 한 체벌,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 이웃이 고발·신고하는 사회분위기 부족 양부모에 대한 선입견 부모교육 부족
성학대			
방임			
유기			
중복학대			

-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하는 모든 행위
-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고의적,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 유기 : 성인의 보호감독을 받아야 하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12년부터 방임의 한 종류로 포함)
- 중박학대: 신체, 정서, 성 학대와 방임, 유기 중 2개 이상 학대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학대 신고가 14년도 9월부터 112로 통합되면서, 신고접수 시 관할 지구대는 의무적으로 5분 내로 학대 의심가정에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의사, 유치원과 학교 교사 등 신고 의무자보다 이웃과 주변지인 등 비신고 의무자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개입과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가장 근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변이웃과 환경에서 적극적인 보호와 역할수행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만13~15세의 경우 다른 연령에 비해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보다 높았으며, 또한 신고의무자의 신고사례 판정률이 비신고의무자보다 높았습니다.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의 아동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더 정확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전체 피해자의 42.1%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학령기 아동들을 둔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교육 강화측면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편 학령기 이전의 아동 피해는 전체의 1/4 수준으로, 다른 연령에 비해 외부활동이 적고 학대피해를 받았음에도 발견될 가능성이 낮고, 자기방어 및 의사표현의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에 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만1세 미만의 경우 자신의 의사표현을 전혀 할 수 없어 학대발견이 매우 어렵습니다. 영아의 경우 아동학대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처벌강화와 같은 사후조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수조사와 부모교육을 통한 선제예방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가 학대를 참고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조치되지 않고 가정으로 돌아가 오히려 학대의 수위가 더 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보호자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도 피해자가 학대를 감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보면 친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부모가 아닌 관계더라도 시설종사자, 친인척, 친조모, 위탁부모 등 아동의 간접적인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호자에 의한 학대는 타인의 신고 없이 발견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와 분리 이후 피해아이들에 대한 응급지원책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아이들과 그 부모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조속히 보완해야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규모를 확대하고, 심각한 트라우마와 후유증을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상담인력과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정부의 인식과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학대 피해아동을 예방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족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해 여러 부처가 따로 따로 지원하지 않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공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돌려보내면 끝나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해서는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사/의료진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필요하다면 가정폭력전과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정책을 강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당은 아동학대 및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대가 대물림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오.

☞ 답변 없음

## <보론> 국민의당 아동학대 없는 세상 만들기 총선공약

### 1.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성인이 되어서도 후유증이 남고 주변인들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많고 친밀한 관계(가족, 연인관계) 내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폭력에 대한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폭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 개선방안 >

- 아동의 물리적, 정서적, 성적 학대 예방을 위한 부모/교사/의료진 등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예방 교육 의무화

-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신고자 예방교육 의무화 조항 첨부 및 교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 제재 사유

- 가정폭력전과공개법 추진
  - ▶ 전과 정보 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역정보결정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권 및 정보 보호법 등을 고려한 신중한 공개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추진되어야 함

### < 기대효과 >

- 학대 대물림 예방
-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 2.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소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형사사법 절차에서 2차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성폭력 대상이 연인관계일 경우에는 성폭력에 대한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 개선방안 >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과거 성력이 논의될 경우 재판장이 이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는 의무조항 신설
-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측이 고소인의 사건 외 성적행동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 강화
  - ▶ 연인이더라도 폭행, 협박 등 강제성이 인정될 경우 성범죄로 인정

### < 기대효과 >

-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여성의 성범죄 피해보호를 강화

## 3. 산모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산모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불안한 산모들이 많고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처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 개선방안 >

- 출산·육아 원스톱 상담센터 설치(기존의 보건소 조직과 공간을 활용)
  - ▶ 1회/월 전담간호사가 건강을 체크
  - ▶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 제공
  - ▶ 출산 후 아기 백신주사 접종시기 관리
  - ▶ 핀란드 네오볼라(Neuvo) 시스템 준용  
: 1회/월, 건강 체크. 출산 후 아이의 백신주사 접종시기도 관리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지원을 위한 상담·보호시설 확충
- 만 3세까지 전담 간호사가 각 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상태 확인

### < 기대효과 >

- 임신·출산·육아 정보 제공 및 막연한 불안감 해소
- 저출산 해소

## 노동당 답변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연적인 원인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고 다분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병리적 사회의 반영입니다. 노동당은 법이나 제도의 불비보다는 아동을 학대하는 데 이른 성인들의 처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빈곤과 불평등, 살벌한 생존 경쟁이 성인들의 정신세계를 파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가속화될 빈곤, 실업, 불평등은 아동학대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으로 봅니다.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 부모 : 경제적 곤란, 사회적 배제와 차별 등이 주요 원인이 되어 저항 능력이 없는 자식에 대한 학대로 비화, 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이 원인이 되기도
-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 : 높은 노동강도에 비해 임금 등 열악한 근무조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불비
- 초중고 교사와 학원 강사 : 경쟁교육으로 인한 잘못된 권위의식, 부모의 저자세 등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신고 의무자의 신분 비공개 보장  
-신고 이후 피신고자의 보복 가능성에 대한 대비  
-신고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공익제보자 차원의 보상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연령대별로 '학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부모, 교사 등의 경우 지속적인 관계로 인해 학대인지 아닌지 스스로의 판단 기준이 부재할 수 있다는 것과 '보복'의 위협에 대한 본능적 위축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치유와 회복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분리 아동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돌봄 프로그램은 분리가 장기간, 영구적일 경우까지 대비해 시설, 경제적 지원, 입양 등까지 포괄하는 종합 프로그램이어야 합니다.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를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인식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위주, 현장대응 위주 정책에 집중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에 착목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돌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피해가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것일 경우 신고와 처벌 강화만으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지속되는 근원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사회복지의 강화라는 근원적 해법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당은 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할 근본적인 해법을 이번 총선의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동 학대 내지 아동 인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을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범주에 지나친 학습 강요도 포함시켜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업일수와 수업강도를 줄이는 정책도 마련했습니다. 경쟁교육을 협력교육으로 전환하는 일도 교육정책에 반영했습니다.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요.

☞ 답변 없음



## 녹색당 답변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을 재질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누구에 의한 누구에 대한 어떤 학대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언론이나 정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지칭하는 ‘아동학대’라고 하면, 형사법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아동학대’로 한정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처벌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호·양육·교육·감독하는 성인이 18세 미만인 사람(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의 의한 「형법」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위 유인, 강간, 추행, 명예훼손, 주거침입, 권리행사방해, 사기 공갈, 재물손괴, 아동학대치사상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보고서」에 의하면, 2010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례 수는 5,657건으로 아동 1,000명당 피해학대아동 보고율은 0.57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발생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 4,633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5,657건으로 6년간 약 1.2배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유형별로 보면, 여러 가지 학대유형이 동시에 발생한 중복학대의 비율이 42.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방인(33.1%), 정서학대(13.7%), 신체적 학대(6.1%), 유기(0.2%)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 가운데 신고 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을 감안하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도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sup>29)</sup>

2. 그런데 한국 사회의 ‘아동학대’가 이것뿐인가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2011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을 보면,<sup>30)</sup> 위원회는 아직 이행되지 않는 권고사항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체벌의 전면적

29) 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121,122쪽

30) 보건복지부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465쪽

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가정, 학교 및 대안돌봄 환경에서 체벌이 여전히 성행한다는 과거 우려사항을 반복하며, 1)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 2) 체벌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대중교육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교체벌에 대한 대안인 그린마일리지 제도를 포함, 가정과 학교에서의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형태의 훈육을 장려할 것, 3) 체벌 피해자 아동이 체벌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민국 내 육체적, 정신적 아동학대 및 방임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학대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있다는 사실을 우려와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교내 괴롭힘의 빈도와 정도가 증가해왔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을 환영하나, 그 수가 제한적이며 재원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이러한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의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자의 신원 및 안전을 고려하는 적절한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2) 교내 괴롭힘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 아동학대 및 방임을 신고할 법적 의무를 강화하고 확대할 것, 3) 지역 시설을 포함, 더 많은 보호기관을 설립하고, 학대 및/또는 방임 피해자를 위한 충분한 외상 후 지원 및 재활지원을 제공하는 등 이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유엔사무총장의 아동폭력보고와 관련하여, (i)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의 개발, (ii)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의 도입, (iii) 자료 수집, 분석, 보급 체계 통합 및 아동폭력관련 연구의제 통합을 다음 정기 보고서에 포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심각하게 높은 자살률에 대해 여전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정 내에서 그리고 교육제도 하에서 아동의 자살위험요인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대한민국에 촉구”하며,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및 제도적, 행정적 방안 이행에 관련 아동에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충분한 수의 사회복지요원이 지원되도록 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내 전반적인 아동정신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아동, 특히 여아의 우울증 비율과 자살률이 증가해왔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대한민국이 자살위험자 조기발견과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나, 이러한 진단검사가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1) 특히 대한민국 교육제도 내에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극심한 경쟁에 대해 우려하면서, 2) 교과과정 외의 추가적인 사교육이 일반적이며, 이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심각하고 불균형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 기존의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사교육비로 인해 심화되고 있고, 사교육이 여가와 문화활동에 대한 아동 권리의 충분한 실현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 3) 괴롭힘, 특히 외국 출신 아이들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와 빈도가 증가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을 하는 데 휴대폰과 인터넷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갖고 주목하면서, (i) 현 교육 및 관련 시험 제도를 평가하고, (ii)

사교육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의 근본 원인과 사교육에서 비롯되는 대학진학시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하고, (iii)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것, (iv) 학생간 괴롭힘을 방지하고 외국출신 아동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아동이 참여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3. 녹색당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기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녹색당의 정책기조는 기존의 ‘아동학대’의 정의 안에 ‘보호자’와 ‘요보호 대상 아동’이라는 패러다임을 재구성하여, 가정 내, 교육제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확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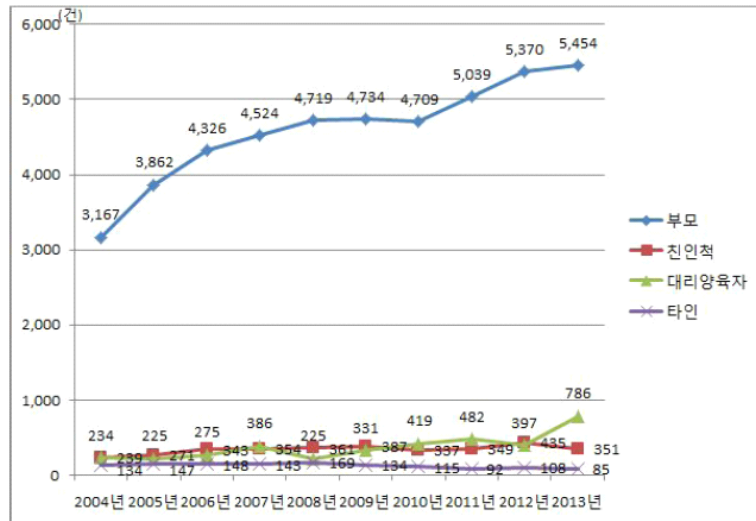
역사적으로 아동의 권리와 관련된 주요 행위자 - 즉, 아동의 권리를 부여하고 보호하는 주체 - 는 국가와 가족(특히 가장)이 중심이었습니다. 과거 가장에게 부여되었던 아동에 대한 절대적 권한이 19세기 이후 점차 국가로 이양되면서, 국가가 가족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역할과 아동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주체의 역할 변화와 동시에 아동의 입지 또한 ‘가장의 예속물’로부터 ‘보호의 대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 권리를 이행하는 ‘권리의 주체’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sup>31)</sup>

따라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녹색당의 정책 기조는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1)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장하고, 2) 보호자의 사적 의무를 넘어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아동학대의 가해자-피해자 관계는 부모(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친인척(조부모, 친인척, 형제자매), 대리양육자(부모의 동거인, 유치원 종사자, 교원, 시설종사자, 위탁모, 베이비시터 등), 타인, 기타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가해자 중 가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집단은 ‘부모’로 83%를 차지하고, 대리양육자 7%, 친인척 6%, 타인 2%의 순으로,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다른 가해자 집단에 비하여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부모가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공간에 동거하는 비율이 78%에 이릅니다.

31) 외(2012),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정책 발전방안 연구 85쪽; 이혜원(2006), 아동권리와 아동복지



[그림 2-13] 아동학대 가해자-피해자 관계 추이(아동보호전문기관, 2004-2013)

최근 10년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의 가해자의 성별은 남자 60%, 여자 40%인데, 10년간의 추이를 보면 여성의 증가속도가 남성의 증가속도 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연령은 40대가 41%, 30대(32%), 50대(10%), 20대(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직업은 무직(28%), 단순노무직(15%), 서비스 및 판매직(9%), 주부(7%), 전문직(4%) 등의 순으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주부와 전문직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다양한 환경적,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양육태도 및 양육방법 부족'과 '사회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이라는 정신적,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아가 53%, 남아가 47%이고, 가장 많은 피해아동이 있는 연령구간은 10-12세(25%), 7-9세(21%), 13-15세(20%)입니다.<sup>32)</sup>

###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CCTV를 설치하면 아동학대가 사라질까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를 조기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보육' 실현을 위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개선, 안정성 제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 <녹색당 공약 자료집> 보육의 공공성을 넘어, 아동, 양육자, 그리고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 실현

— 보육은 그 자체로 사회적 책임의 영역이지만, 현실적으로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노동자 여성에게는 경력지속을 위해 가장 절실한 요건이 신뢰할 만 한 보육시설의 존재이다.

—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국 아동 수 기준 30%이상으로 확충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전히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다수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

32)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48~54쪽

한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노동자 여성이 대부분인 어린이집 종사자, 아이돌보미 등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처우 개선은 아동과 양육자, 교사 모두를 위한 인권보육의 조건이다.<sup>33)</sup>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직접적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으로는, 아동학대 미신고 이유로, ‘가정문제 간섭할 수 없어서’(47%), ‘심각한 아동학대 아니라고 판단’(51%)이라고 응답하여 아동학대 사전예방에 대한 인식수준이 저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sup>34)</sup> 따라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아동, 일반 대중, 그리고 아동관련 직업 종사자에 대하여 아동권리 및 인권에 관한 교육을 포함시키고, 아동을 위해 또는 아동과 함께 일하는 전문단체들이 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충분한 연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녹색당은 오늘날, 청소년이 겪고 있는 근본적 고통은 청소년들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보고 있으며, 아동/청소년들이 가정 내, 교육제도,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겪고 있는 폭력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권리 확장을 위한 지원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sup>35)</sup>

#### <녹색당 공약 자료집><sup>36)</sup>

1. 배움 주체들의 사회경제적·정치적 권리 보장
  - 청소년·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
  - 일정 시간 이상의 강제적 ‘학습노동’ 금지를 법제화
  - 중등교육과정 6년 중 1년은 학생 안식년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초·중·고등학생의 1년 수업일수 중 10% 범위 내에서 학기 중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을 공론화
  - 학생회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 참여를 제도화
  - 지역별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교육현안의 의사결정에 관한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2. 기본소득: 불평등과 빈곤해소, 불안 탈피, 생태적 전환을 위해 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 1단계: 청소년·청년, 농·어민, 장애인, 노인에게 월 40만원의 기본소득과 모든 연령대의 시민들에게 생채배당금을 지급
  - 2단계: 1단계 시행성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
  - 기본소득과 동시에 최저임금 대폭 현실화, 노동시간 단축, 주거권 보장 추진
3. 선거권 연령 인하, 청소년/청년의 정치적, 경제적 시민권을 보장

33)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3쪽

34)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 진상조사위원회 최종 제도개선책 발표와 정부 대책 긴급 토론회 자료집, 34쪽

35)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63쪽

36)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6,7,15쪽

-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낮춤
- 민주시민교육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학생의 교육권 보장
- 공공임대주택 보급 확대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

한편, 학대 아동의 연령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가 상이한데, 특히 피해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첫째 서비스 제공비율이 가장 높은 피해자 집단은 학령기 아동으로(77.7%), 이는 학령기 아동이 학대후유증이 가장 많다는 사실과 연관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학령전 아동(67.1%), 청소년 학대피해아동이 가장 적다(62.7%)고 나타나 학대 후유증 분석 결과 학령전 아동보다 청소년 피해자가 후유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적게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sup>37)</sup>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피해자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사회경제적 취약성,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의 저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녹색당은 아동/청소년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확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과, 아동 인권의식에 대한 교육과 대중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색당은 특히 현재 가정 내 성소수자 혐오로 인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 대책이 전무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우선 과제로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고,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sup>38)</sup>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녹색당은 앞서 밝혔듯이,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확장하고, 보호자의 사적 의무를 넘어 국가의 적극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요.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사회분야 이행에 배정된 재원이 대한민국의 높은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할 때, 이용 가능한 자원 대비 현재 배정된 자원의 비율은 낮은 수준이며 2009년 OECD 가

37)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209쪽

38) 녹색당 2016년 제20대 총선 정책공약집 187쪽

족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서 26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4년 아동복지 예산은 1.4%이나 이중 5세까지를 위한 보육예산이 1.34%를 차지하고, 만 6-18세 보육 외 아동복지 예산은 0.06%에 불과해 불균형 상황이 심각합니다(보건복지부, 국회예산처, 2014). 정부의 2013년 아동복지예산은 총 237,811백만원으로 아동복지지원(방과후 활동지원, 드림스타트 지원) 181,095백만원(76.1%),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아동시설지원, 학대아동 및 실종보호지원, 가정입양지원, 가정위탁지원, 아동발달지원지체계좌지원) 55,825백만원(23.5%), 아동정책(아동정책연구 및 통계조사, 아동참여인권증진) 891백만원(0.4%)로 나타났습니다(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2013). 또한 2010년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예산은 사회복지 예산대비 자체사업 비중 아동은 최고 서울 3.1%, 최저 전북 0.1%로 나타났습니다(김미숙, 정익중, 김정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이와 같이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예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지역 간 편차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특히 지자체로 이양된 이후 아동복지 사업은 더욱 후순위 복지사업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2015년부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예산을 국가 환원 시켰는데, 아동복지 분야 중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부터 예산의 국가 환원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sup>39)</sup>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동학대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예산을 OECD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보며, 구체적인 예산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 \* 토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말할 때, 아동/청소년이 처한 ‘취약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역량 강화나 권리의 확장을 지향하지 않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아동/청소년의 ‘미성숙’이나 ‘무능력’을 전제로 하는 ‘권리의 제한’으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녹색당은 청소년녹색당을 정당의 공식기구로 인준하였고, 정당의 의사형성 과정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선거운동금지, 정당가입금지)를 확장하기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여 3월 20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독립적, 자율적 행동은 오히려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발현되기도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현실 속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매순간 성인이 시키고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선택과 결정의 과업들을 성인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수행하면서 살아간다. 청소년에 대해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권리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과거 여성에 대하여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를 정당화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sup>40)</sup>

39) (2014),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 64쪽

40) 김지혜(2014), 미성숙 전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제한 - 헌법재판소 선거연령 사건과 섯다운제 사건을 중심으로 -, (사)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제43집 제1호

## 더불어민주당 답변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학대범죄 가중 처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과태료 부과, 학대 현장 출동시 학대행위의 제지·행위자 격리·피해아동 보호시설 인도,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자 접근금지·친권 정지 등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진일보한 내용이 특별법에 규정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 실행방안·인프라 및 인력·예산 미비 등으로 법안의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함. 이것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임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발생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언어적 폭력, 방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함.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환경 및 부모의 그릇된 자녀관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교사 및 강사 등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역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주로 교강사-아동간의 권력관계, 교강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주요 원인임.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함. 아동학대 조사·개입 과정에 신고자가 계속 연관되지 않도록 신고 건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신속한 인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함.

아동학대 처벌 특별법에서는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복지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군 등 30여 직종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의심 사례까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 그러나 대부분이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관계로 의심 사례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곤란.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필요.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 및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일반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아동학대 대처 메뉴얼을 보급해야 함. 그러나 아동(특히 저연령대 아동)의 자기보호 및 자기권리 주장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이 중요함.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족간 신고에 대한 부담감, 가족해체에 대한 두려움, 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음.

2015년 아동 학대 피해자의 5.1%만이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았고, 74.4%는 가정 복귀 조치됨. 상당수의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보호시설(쉼터)의 부족 때문임. 현재 전국 학대피해아동 쉼터의 총 수용 규모 250여 명에 불과. 대폭 확충함으로써 피해 아동(가족)이 가해자와 분리되어 충분한 보호와 치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함.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재탕·삼탕 내용이 주된 것으로서 특단의 의지가 보이지 않음. 근래 정부가 수차례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초등학생 장기결석자 전수조사 등 특정 사건에 매몰된 1회성 대책이 중심임. '지역사회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 → 학대사건 조기 개입 → 충분한 피해아동(가족) 보호·치료서비스 제공'에 충실한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함.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요.

☞ 2015년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이 복지부 추계만으로도 572억원이었음. 그러나 국회증액분까지 포함하여 실제 편성된 예산은 252억원에 불과. 더욱이 2016년에는 67억원이 감액된 185억원만을 편성

이처럼,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방치한 정부와 여당이 1,000억원 운용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의 전형이자 책임면피용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음. ①아동보호전문기관 최소 45개 확충(55개 → 100개), ②피해아동쉼터 대폭 확충(수용정원 250명 → 최소 1,000명), ③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④신고의무자 교육, ⑤부모교육·대응메뉴얼 보급 등에 필요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편성해야 함

## 정의당 답변서

1.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사망에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 이외에도 신고조차 되지 않는 아동학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동학대처벌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아동 학대를 여전히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인식하고,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바라보는 사회전반의 인식과 문화가 바뀌지 않는 이상 아동학대를 예방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  
- 아동을 때리는 것이 학대라는 인식과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전국민적으로 정착되어야 함.

2.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뿐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과 초중고 교사, 학원 강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대가 일어나는 주요 장소별 아동학대 유형 및 그 발생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발생장소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5.9%인 총 8,61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 중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는 총 8,400건(83.8%)로 10명 중 8명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과 같은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는 각각 300건(3.0%), 171건(1.7%), 96건(1.0%)으로 전체 사례 중 5.7%에 해당

### [아동학대발생장소]

(단위 : 건, %)

발생장소		건수(비율)
가정 내	아동 가정 내	8,400(83.8)
	학대행위자 가정 내	210(2.1)
소계		8,610(85.9)
집근처 또는 길가	친척집	185(1.8)
	이웃집	79(0.8)
	어린이집	9(0.1)
	유치원	300(3.0)
	학교	96(1.0)
	학원	171(1.7)
	학원	96(1.0)
	병원	40(0.4)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180(1.8)
	기타복지시설	30(0.3)
소계		210(2.1)
숙박업소 종교시설 기타 파악안됨	숙박업소	49(0.5)
	종교시설	20(0.2)
	기타	147(1.5)
	파악안됨	15(0.1)
계		10,027(100.0)

\*출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또한 아동학대가 거의 매일 발생한 사례가 3,073건(3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3일에 한 번인 경우가 1,371건(13.7%), 일주일에 한 번인 경우가 1,253건(12.5%)임.

즉,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빈번하게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56.8%로 전체 사례의 절반 이상을 차지. 만성적인 학대는 일회성의 학대보다 아동의 발달에 미칠 수 있는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음.

- 아동학대사례 유형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 다양하게 나타남. 신체학대에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직접적 신체 가해 행위 및 도구 등을 활용한 간접적 신체 가해 행위 등이 해당. 정서학대에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 등 포함. 성학대는 아동 대상의 모든 성적 행위로 성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나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이 해당. 방임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그리고 유기를 포함

-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를 살펴 보면, 학대 행위자에게 나타나는 주요특성으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 10,076건(33.1%), 사회·경제적으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거나 고립을 경험하는 학대행위자 6,200건(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 3,050건(10.0%) 등임. 부모가 자녀 양육방법과 지식이 부족할 경우 학대 관련 인식의 결여로 이어져 자녀를 학대하기 쉽기 때문에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절실. 그러나 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양한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생함. 따라서 이런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입방안 마련 필요.

### 3.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가운데 대표적 직군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등이 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신고하는 등 적극적 옹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 의무자에 대한 어떤 보호조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영유아보육법만 규정 되어 있어 보육교직원만 해당.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내부에서 아동학대 신고한 신고자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 될 수 있도록 확대.

- 특히 아동복지시설과 같은 시설에서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시설폐쇄 등 위험으로 인해 내부에서 학대를 발견하더라도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음.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하여 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

### 4. 학대 피해자인 아동이 ‘발견되고 보호받는’ 대상일 뿐 아니라 자기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할 때, 학대 피해자인 아동의 연령대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연령대를 고려한 지원 정책은 각각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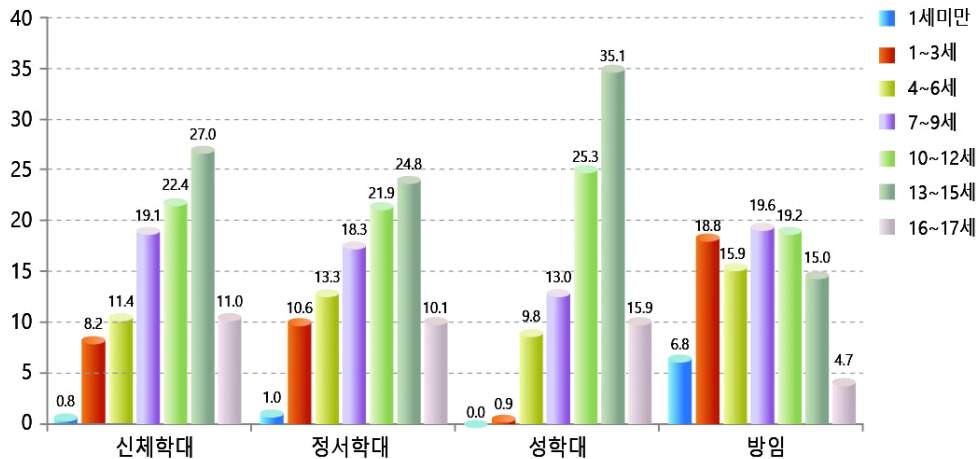
☞ - 아동이 학대로부터의 보호를 스스로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되기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강화해야 함.

#### 피해아동 연령대 고려한 지원 정책

● 학령기 아동의 경우 학교에서의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강화 필요. 또한 가정 내 아동학대 발생시 주소지 이전 및 전학지원 조치에 있어 행정기관의 이해부족으로 친권자 동의와 서명을 요

청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 필요. 아동이 가정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아동학대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학교-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협업 강화 필요

●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총 319건의 아동학대사례 중 방임사례가 212건으로 과반수 이상(66.5%)에 해당.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제도 내에 아동학대 의심 지표 추가해 영아 대상의 아동학대 조기 발견 체계 마련 필요. 특히 영아 또는 장애아동 대상 입소 가능한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의 확대 필요.



\* 출처: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 5. 피해자가 학대를 참아내고 신고를 주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가해자 분리 이후 피해 아동과 피해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아동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미약. 또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 않음. 특히 부모가 가해자일 경우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반면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폭력에 대해 증명하기 어려움. 게다가 처벌을 여전히 훈육과 혼동하는 사회이기에 이를 정확히 드러내기에 쉽지 않음.

#### - 가해자 분리 후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 대책

● 생계를 책임지는 학대행위자 분리되었을 시 원가정에 남은 피해아동과 가족들의 긴급생계비 지원

-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까지 연계해 피해가족의 자립 지원
- 피해아동과 피해가족 심리상담, 의료지원, 보호시설 지원 확대
- 법률 지원
- 가해자에게도 2차 재학대를 막기 위해 치료, 상담, 교육 의무화

### 6. 지난 2월 25일 발표된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까?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귀 정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하실 계획이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 - 기존에 있는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계획은 있으나 예산은 부족한 상황.

-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이와 함께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아동학대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혀야 지역 내 신고 및 보호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음.

7. 얼마 전 여당인 새누리당이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현행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액된 예산의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면, 어떤 정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자 하십니까? 1~5순위까지 밝혀주시요.

☞ - 1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전국적으로 확대 / 공공기관화

- 2순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쉼터 종사자 확대, 처우 개선 강화

- 3순위: 부모교육(훈육방법) 개발과 보급, 대국민 홍보 강화

- 4순위: 피해아동 및 피해가족 지원 강화

- 5순위: 경찰, 전문기관, 쉼터, 학교,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협업체계 강화